

●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 규정

제정 1998.10.19 내무부훈령 제14호
개정 1999.11. 5 행정자치부훈령 제34호
2005. 9.26 행정자치부훈령 제1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분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 등』을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재정운영분석”이라 함은 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집계·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정지표분석”이라 함은 재정을 분

석함에 있어 재정운영분석결과를 건전성·효율성의 영역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영역별 및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진단”이라 함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재정분석

제3조(재정보고서 작성) ①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는 재정보고서 등의 서식, 작성기준 및 재정분석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에 의거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분석 실시) ①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 등 재정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종합 및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내용과 각급 지방자치단

체별 내용을 분석한다.

②행정자치부장은 재정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전성과 효율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한다. 이때 개발되는 지표는 지방재정의 수지, 세입, 세출, 예산·결산관리, 재정투명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③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재정분석의 체계, 지표, 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일부를 보완할 수 있으며, 3~5년 단위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표의 분석방법 등) ①행정자치부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한 재정지표분석은 지표별 산식을 개발하여 단년도분석 및 추세치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②재정지표의 분석, 점수산정 및 등급결정 등은 절대평가방법과 상대평가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③재정지표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등급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진단

제6조(재정진단 대상단체 선정)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3항에서 규정된 재정진단 대상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수안정도 등 주요 세입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세입액 등의 증가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2. 경상경비비율 등 주요 재정지출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경상경비 등의 증가가 현저한 지방자치단체
3. 지방채무상환비율 등 주요 채무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4. 재정분석결과 분석영역별 또는 종합적으로 하위등급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운영분석 및 재정지표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운영과정에서 위기가 우려되어 긴급히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정진단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제7조(재정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심의 결정하고 재정진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되며 위원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재정·조직·인사·회계

등 전문가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재정진단의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 의뢰 등 기본사항 심의
2. 재정분석결과 재정진단대상단체의 선정 협의
3. 재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4. 재정불건전단체의 지방재정건전화 계획 수립내용 검토
5. 재정분석기법 개선방안의 심의
6. 기타 재정진단실시 및 진단결과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위원회는 재정진단의 전문적인 실시 및 제1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재정진단 실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재정진단실시) ①평가단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진단 실시방향, 평가단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재정진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재정진단실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확정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재정진단실시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진단 결과 총평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요인과 발생사유
3. 재정불건전의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및 조언·권고 사항
4.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재정건전화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계획수립 권고안
6. 재정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건의하여야 할 사항
7. 기타 재정진단에 따른 제안사항 등

제10조(실비보상 및 경비부담) ①위원회의 위원회 참석 및 평가단의 회의개최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재정진단에 따른 경비는 재정진단을 의뢰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진단 실시를 의뢰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장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제11조(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4항에 의거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재정건전화계획 권고

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이하 “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동시행령 제165조제5항에 의거 당해단체에서 권고안을 기초로 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화계획의 내용) 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5년이내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기본방침
2. 건전화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계획
3.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4.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절감, 사업비의 배분계획
5.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6. 계획기간중 부족재원의 조달계획
7.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제13조(건전화계획의 시행) ①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지원한다.

②건전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등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대로 건전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재정분석결과 등 공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상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재정운영분석 결과
2. 제5조에 의한 재정지표분석 결과
3. 제9조에 의한 재정진단 실시결과
4. 제12조에 의한 건전화계획 수립내용
5. 기타 재정분석·진단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현지 업무수행) 재정분석 및 진단과 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현지확인 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 위원과 평가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재정분석·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업무수행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수립 표준모델 적용)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

진단의 실시 및 실시결과 건전화계획의 수립에 있어 통일된 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정진단 실시기법 및 지방재정건전화계획 표준모델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인센티브 부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재정분석지표, 지표별산식, 점수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별 유형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